

채무조정 요청서

■신청인 기본정보

성명	생년월일	연락처	주소

■채무조정 요청대상

채권금융회사	계좌번호	대출일자	잔액(원)
카카오페이증권			

■채무조정 요청사유

실직	폐업	질병 및 사고	소득 감소
☐	☐	☐	☐
기타			
☐ ()			

■채무조정 요청 관련 안내사항

- 채무조정 요청권이란,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(이하 "개인채무자보호법" 이라 한다)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.

- 개인채무자보호법 제 35 조제 1 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합니다.

1.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후 3 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
2.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, 조정 등이 진행 중인 경우
3. 신용회복위원회·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,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

- 개인채무자보호법 제 36 조제 1 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
1.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 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
2.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
3.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

- 채무조정 요청 결과는 요청 후 채권금융회사 심사를 거쳐 10 영업일 이내에 안내되며,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귀하가 동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채무조정 절차가 종료됩니다.
 -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경우,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-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된 후 3개월 이상 미납시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됩니다.
 - 당사 채무 뿐만 아니라 타 금융회사 채무 등 다중 채무로 인해 상황이 어려운 경우,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상담을 권해드립니다.
 - 채무조정 요청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.
 1. 채무조정요청서
 2. 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 동의서
 3. 채무조정안
 4. 변제능력 입증자료
- ※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, 심사 중 상기 서류 외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.
- ※ 주소지 및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, 즉시 카카오페이증권 고객센터(☎1600-8515)로 변경 내용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■본인은 상기 항목의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하였고, 채무조정 요청에 따른 안내사항을 숙지하였습니다. 이에 귀 사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.

0000 년 00 월 00 일

신청인 본인 : (인)